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득인정액 및 의료급여에 장애인 특례 규정 마련〉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81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소득인정액에 장애인 특례 규정 마련	3
2. 의료급여에 장애인 특례 규정 마련	9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4

I. 개요

1.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81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5. 6.
- (3) 회 부 일 : 2026. 5.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0,277명으로 대부분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장애인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공제함으로써 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주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여도 생계급여가 덜 감액되도록 하여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소득에서 공제되고, 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여 얻는 소득의 경우는 50%가 공제되는데,

이러한 소득공제율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장애인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에 해당함.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약 1.76배 많은데, 이러한 장애인이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도 소득 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결국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그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를 도모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3제3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소득인정액에 장애인 특례 규정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이 얻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세소득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u>실제소득</u>,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이 얻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u>그 밖에 실제소득</u>----- ----- ----- -----.

나. 검토의견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 법 제2조제9호1)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소득평가액은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합한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함.²⁾

<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 >

소득 인정액	구분	산식
	소득평가액 (제6조의3제1항)	실제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유인요인(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제6조의3제2항)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 또한, 현행 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등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며³⁾,

등록장애인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 대하여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및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20만원을 우선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를 추가로 공제하고 있음.

< 등록장애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

공제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등록장애인	근로·사업소득 ⁴⁾	20만원 우선공제, 잔여액의 30% 추가공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 우선공제, 잔여액의 50% 추가공제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가구 전체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장애인만을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보장하는 등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⁵⁾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 ~ 7. (생략)

8. 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만 해당한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4) 청년(34세 이하)인 경우 60만원 우선공제, 잔여액의 30% 추가공제

□ 이와 같은 특례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9,816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39만 7,710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는 점⁶⁾에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⁷⁾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최저임금법」 제7조⁸⁾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이 얻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소득을 얻는 장애인에 대해 급여 지급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수급권은 소득인정액이 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발생하고,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급여가 증가⁹⁾할 수 있는데,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재활 및 의료비, 돌봄비용 등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개별가구보다 필요한 기본재산액 및 최저생계비¹⁰⁾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산출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5)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거나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보장함(2025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40)

6) 양가희, 이정아 기자, “최저임금 못받는 장애인 근로자 1만명 평균월급 40만원…최저임금 전환 1%도 안돼”, 뉴스핌, 2024.9.19.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8)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므로, 소득인정액이 감소할수록 수급액이 증가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써,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특성과 추가 지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른 취약계층에 비하여 추가적인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특정 계층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 특례가 확대될 경우 다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유사한 특례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러한 특례 확대는 수급대상자 증가 및 급여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생계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6,826억 원(8.0%) 증가한 9조 1,726억 원, 의료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1,517억 원(13.3%) 증가한 9조 8,399억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관련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증가 추세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생계급여	5,264,772	6,014,148	7,541,072	8,489,981	9,172,676
의료급여	8,123,234	9,098,368	8,937,713	8,688,201	9,839,997

자료: 보건복지부(본예산 기준)

□ 또한,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의 기본 원칙만 법률에서 정하고, 실제 소득의 범위와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상황, 최저임금 수준, 물가상승률, 복지정책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중 70%를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구체적인 공제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 향후 제도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

특히, 적정한 공제 수준은 장애인의 소득 수준, 최저임금 변동, 재정 여건 및 기존 소득공제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공제율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신축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의료급여에 장애인 특례 규정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가하여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가하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본다.
③ <u>의료급여에</u>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④ <u>그 밖에 의료급여</u> ----- -----.

나. 검토의견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임.¹¹⁾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자¹²⁾로 구성되고,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데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 참고로,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159만 5,452명이며 관련 예산은 8조 8,223억원이 편성되었고, 2026년에는 9조 8,400억원이 편성되었음.

11)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최근 5개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예산(지방비 포함) 현황 >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월
수급자 수	1,516,507	1,524,098	1,544,591	1,595,452	1,635,359
합 계	104,854	118,192	116,393	117,601	131,478
(증가율)	(3.0%)	(12.7%)	(△1.5%)	(1.0%)	(11.8%)
국 비	78,841	90,623	89,377	88,223	98,400
지방비	26,013	27,569	27,016	29,378	33,078

* 추경, 예비비, 이·전용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 수급자 수는 연평균 기준, 2026년의 경우 2월까지의 자료임.

- 현행법 제12조의3제2항13)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인정됨.

<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더하여 산정.

** 자료: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개정안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14)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대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간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는 본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이므로,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생계보장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의 자활과 자립을 촉진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¹⁵⁾,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 의료비 지출이 높고¹⁶⁾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의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 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정 범위 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을 일정 기간 유지시켜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자활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0년 ~ 2024년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수 >

(연도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수급권자 수		1,526,030	1,516,525	1,522,292	1,517,041	1,559,922
장애인	수급자 수	464,989	463,051	464,096	462,438	478,718
	심한	305,041	301,794	299,455	296,685	307,616
	심하지 않은	159,670	161,100	164,554	165,697	171,084
	기타*	278	157	87	56	18

* 해당연도 수급권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결정보류·장애 미해당(호전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상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6) 송민섭 기자,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657만원…비장애인보다 4.1배 많아”, 세계일보, 2023.2.21.

□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는 장애가 아닌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집단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에 게 의료급여의 소득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24년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8천원으로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226만 1천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령층 역시 지속적이고 높은 의료비 부담을 지는 의료취약집단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이와 유사한 취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298)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최저생활 보장, 근로 유인하려는 입법 취지 및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을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다만, 일부 장애인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는 장애인 간 형평성 뿐 아니라 노인 등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되고,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및 보호의 확대는 관련 제도를 통해 추진함이 제도·법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기획예산처) 장애인의 근로유인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다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에 한정하여 근로소득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 간, 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2년간 수급권 유지 특례를 적용하는 것도 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특례 규정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 효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유사 특례 요구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부천시) 일반수급자, 근로무능력(노인, 질병) 및 장애 정도가 다른 장애인 간 형평성 저해 및 최저생활 보장 중심의 제도 취지 충돌이 우려됨.

문 의 처
02)6788-5497